

[자율기구] 도시정비지원과 업무추진 계획

□ 설치배경

- 「노후계획도시정비법」 시행으로 '도시정비기획단'을 설치하였으며,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시책 마련 필요
- ☞ 자율기구인 '도시정비지원과'를 설치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재원조달, 이주대책·기반시설 계획, 사업시행 지원 등 추진

□ 기구개요

- (목적)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 방안 마련
- (근거) 「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부훈령)
- (체계) 국토도시실 하위의 과 단위 기구(정원 7명)
- (존속기한) '24. 5. 28. ~ '24. 11. 27.(6개월)
- (기능)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, 법·제도 정비

□ 주요업무

- (금융지원) 「미래도시 펀드」 조성,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개발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시책 마련
- (이주대책) 지자체별 연간 정비물량 설정 적정성 검토,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지정, 이주단지 부지·공급방식 검토 등 이주대책 지원
- (사업시행지원) 리츠형 정비사업 구조 마련,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, 공공지원 조합설립, 공공시행자 운영 등 사업시행 지원
- (기반시설) 기반시설·광역교통시설 계획 검토,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안, 지자체 특별회계 운용방안 등 검토